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 특수면허 합격자  
실무교육실시**

RI협회는 원자력법제95조제1항의 단서 규정 및 과학기술처고시 제96-3호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면허시험 합격자의 실무교육을 정부로부터 지정위탁 받아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실무교육일정**

과정명	교육일자	교육장소
특수과정	'97.1.6~7	RI협회 서울대학교병원
감독자과정	'97.1.15~16	RI협회

지난해 11월 17일(일) 충남대학교 문과대학에서 실시되었던 시험에 대한 결과가 12월 9일 발표되었다. 응시자 233명중 감독면허 22명, 특수면허는 응시자 21명중 6명이 합격되었습니다.

감독자 면허(22)				특수면허(9)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7007	황인안	7124	이정돈	8502	전도익		
7008	이화형	7509	김대학	8503	백진영		
7019	권인태	7522	손성한	8510	최효선		
7020	오영훈	7526	양기각	8513	배오근		
7022	추승호	7528	변수현	8514	최윤영		
7026	신원준	7531	박상준	8515	황희성		
7028	김영미	7546	양대근				
7037	신건철	7614	정주영				
7050	김을기	7631	민병인				
7074	차길환	7634	전상화				
7114	한경호	7669	마채복				

이로서 감독자의 합격률은 9.5%이고, 특수면허는 28.5%로 집계되었습니다.

**폐기물 990드럼 수거, 운반**

우리 협회는 1996년 올 한해동안 협회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전국 각지의 49개 회원사에 대하여 무료로 990드럼의 RI폐기물을 수거, 운반하여 원자력연구소부설 환경관리센터에 인도하였으며, 64개기관에 대하여 1277개의 용기 및 자체제작한 5000여장의 폐기물 포장비닐, 1000여장의 스티커, 3000여장의 꼬리표를 무료로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협회는 올 1997년 부터는 폐기물 관리사업이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한국전력공사로 이관되어도 계속하여 회원사 서비스 측면에서 폐기물의 수거, 운반을 무료로 계속진행할 것이며, 1996년 수거, 운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R.I. 폐기물 수거, 운반 현황**

구분	종 류 별					계
	가연성	비가연성	비압축성	Hepatitis	유기액체	
의료기관	419	88	17	144	22	690
교육기관	133	7	0	0	24	165
연구기관	53	2	0	0	0	55
산업기관	39	1	0	3	19	62
공공기관	0	0	18	0	0	18
합 계	644	98	35	147	66	990

**R.I. 폐기물 용기 배포 현황**

구분	종 류 별					계
	가연성	비가연성	비압축성	Hepatitis	유기액체	
의료기관	336	87	29	93	38	583
교육기관	168	39	15	0	126	348
연구기관	80	14	4	1	45	144
산업기관	85	13	1	0	44	143
공공기관	22	5	25	0	7	59
계	691	158	74	94	260	1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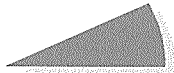
## 원자력환경기술원 개원

한국전력공사 부설 원자력환경기술원(원장 장인순)이 9일 원자력 관련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덕연구단지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정부의 245차 원자력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내 방사성물질 관리사업을 총괄 수행하게 될 원자력환경기술원은 그간 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하던 중, 저준위 방사물 및 사용 후 핵연료 관리사업, 동위원소 방사물 관리, 원전의 방사물 관리 지원, 방사물 처리 및 처분과 관련된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장인순 초대 원장은 그동안 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환경관리센터 소장으로 재임해 왔으며 향후 원자력연구소에서 담당하던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편 이날 개원식에서 이종훈 한전 시장은 『원자력환경기술원 발족을 통해 향후 원자력 사용량 증가에 따른 시설 및 방사성물질의 안전성 확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원자력연구소에서 이관된 인력들의 연구분위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 Q & A

〈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보고를 관독업체에 의뢰하여 보고대행 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이 제도는 원자력관계사업자(RI등 사용기관)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보고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RI등 사용기관이 일정한 서식에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을 직접 작성하여 당 협회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고대행이란 관독업체에 피폭방사선량 측정을 의뢰한 경우 소정 절차에 따라 그 관독업체가 대신하여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이 착오를 일으키는 것은 관독업체와 관독계약만 하면 보고대행이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어 보고가 누락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고대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독업체와 협의를 거쳐 당 협회에 「보고대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대행중에 있는 사업자 가운데 간혹 보고대행 착오로 인하여 누락되는 종사자가 있거나 잘못 보고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정확하게 피폭선량 관리가 되고 있는지 협회에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 피폭관리실〉

〈문〉 수입신고서 필요한 제출 서류와 처리, 소요기간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 필요한 서류는...

1. 수입승인신청서 5부
2.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수입계약서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1부(수입대행시 해당자에 한함)
4. 제품의 용도설명서 1부이고  
처리 소요기간은 1일 입니다.

〈자세한문의 : 방사선관리과〉

알림 : 협회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Q & A코너로 엽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